



---

에스엘 윤리규범 실천지침  
(SL Code of Ethics Practice Guidance)

---

2020. 12.

## 1. 적용 범위

가. 에스엘(주), 에스엘(주) 천안공장, 에스엘(주) 안산공장, 에스엘(주) 성산공장, 에스엘(주) 진량공장, 에스엘(주) 전자공장, 에스엘(주) 진량전자공장, (주)에스엘미러텍, (주)케이디에스, (주)에스에이치비 본사, (주)에스에이치비 화성공장, (주)에스에이치비 서산공장, (주)에스에이치비 울산공장, SL 연대, 북경삼립, 동풍삼립, 상해삼립, 진천삼립, 호북삼립, 삼환삼립, 우한삼립, SL 알라바마, SL 테네시, SL 루막스, SL AP, SL 폴란드의 임직원은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이를 합하여 "윤리규범"이라고함)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에스엘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에스엘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 3 자(고객사, 공급업체,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 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 2. 윤리규범의 활용

가.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해 기존 업무 규정 및 절차의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나. 윤리규범을 업무에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속임원과 협의하고, 중요사안은 윤리사무국(감사실, HR 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다.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윤리사무국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라. 총무팀장은 모든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확인을 위한 서약서 서명 관리한다.

## 3. 규제대상

가.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나.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보고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4. 규제대상에 대한 조치

가.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규제 대상에 대한 정보는 비정기적인 업무 감사(필요시) 또는 내, 외부의 제보로써 취득한다.

나. 취득한 정보는 윤리사무국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그 정보를 취급하며, 개인적이거나 이해 관계 등의 이유로 외부로 노출할 수 없다.

다. 규제 대상에 대한 정보는 그 진위를 가리는데 우선하며, 진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다음 조치를 취한다.

라. 규제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외부 의뢰, 인사위원회 회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 ■ 윤리규범 세부실천지침

###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성실한 정보제공

가.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내부의 사양에 관한 변경이나 적용 정보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 2. 행동으로 응답

- 가.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 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 나.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 다. 고객불만 발생시 사후 조치와, 그 결과를 수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 3. 고객의 보호

- 가. 고객의 손해가 곧 우리의 손해라고 생각한다.
- 나.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다.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 4. 직책보임자의 추가적인 책임

- 가. 조직구성원 모두가 고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평상시에 교육, 지도한다.
- 나. 중요한 품질 문제는 발생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배려한다.
- 다. 고객에 대한 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직원들의 권한에 맞게 관리 감독한다.

## 제 2 장. 공정한 경쟁

###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가.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나.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정당하게 활용한다.
- 다.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는 경쟁사와 함께 공유한다.

###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 가.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나.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 다. 자사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개적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한다.

### 3. 뇌물 방지

- 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나. 국제상거래와 관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4.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가.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한다.

#### 5. 직책보임자의 추가적인 책임

- 가.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경쟁방법을 강구한다.
- 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업적을 추구토록 한다.

### 제 3 장. 공정한 거래

#### 1. 공급업체의 선정

- 가.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공급업체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신규 업체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 나. 『신규 업체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다.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 나.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공급업체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다.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라. 공급업체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급업체의 승인을 얻는다.
- 마.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공급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바.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공급업체와 협의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 ③ 공급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④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 ⑤ 특정 공급업체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 ⑥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 3. 공급업체의 지원, 육성

- 가.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공급업체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공급업체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 다.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하며,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직책보임자의 추가적인 책임

- 가.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활동에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다.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한다.

#### 5. 책임있는 자재 구매

- 가.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한다.
- 나.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 광물 및 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을 받도록 노력한다.

###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1. 충실한 직무 수행

- 가. 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관련업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시 충실히 준수한다.
- 나.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며, 수행중 취득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는 즉시 보고한다.
- 다. 사(私)적인 용무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

#### 2. 에스엘인의 품위 유지

- 가. 에스엘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 나. 에스엘인의 행동은 항상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 다.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라.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화환, 축전, 연하장 발송) 행위를 삼가한다.
- 마.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 업체에게 부당한 사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3. 회사 재산의 보호

- 가.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나. 중요한 재산의 관리는 그 책임자를 정하여 관리, 감독한다.
- 다.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취급은 그 인가자로 한정한다.
- 라.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다.
- 마. 기밀정보 유출은 그 출처를 확인하여, 정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 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①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배제)

- ② 이해 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금전대차행위
- ③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④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 ⑤ 직무를 이용한 사리(私利) 도모
- ⑥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나.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하며, 감사실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사에 전파한다.

다. 회사와 직접·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를 금지한다.

라.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마.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바.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 5.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가. 임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됨. 또한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 일 이내에 감사실(또는 신문고)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실은 처리 내용을 지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뇌물 공여의 행위로 간주한다.

- ① 접대성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골프장, 카지노, 증기탕, 안마시술소, 놀이시설 등
- ② 집, 회사로 선물 등이 배달된 경우 (선물을 돌려준 모든 경우도 신고 실시)
- ③ 협력회사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가거나 갔다 온 경우(견학을 위한 해당부서의 품의는 별도 실시)
- ④ 협력회사로부터 숙박, 교통 등을 제공 받은 경우
- ⑤ 본인의 사적인 행사에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 친,인척 결혼, 가족 대소사와 관련한 화환이나 선물을 받지 않으며, 일인당 축의금을 윤리경영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⑥ 대리결제나 상환의 경우 - 임직원이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은 금전수수료 간주.

## 6. 회사 산업정보의 비밀유지(보안규정 준수)

가. 고객 및 협력회사 정보

- ① 고객 및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 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사내 정보

- ① 회사 기밀사항, 신규차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을

금지한다.

②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을 금지한다.

- 경영/재무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관리회계 등
- 영업/판매정보 : 신규 수주 계획, 영업단가 및 고객명부 등
- 인사관리 : 핵심인력 현황, 인사이동 자료, 직원채용 계획 등
- 연구 및 기술 : 중요기술 정보 보유 현황, 설계방법, 설계도, 연구보고서, 실험자료, 중장기 연구생산계획, 신기술 이론 등
- 생산관리 : 공정과정 등 생산기술 자료, 자재구매단가, 기계설비의 작동방법 등

다. 기밀정보 유출은 그 출처를 확인하여 정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라.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7. 내부자 거래 및 정보 활용 금지

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사전에 공시여부를 확인한다.

## 8. 직책보임자의 추가적인 책임

가. 매사에 에스엘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조직구성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나. 부하직원을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성과 소질을 감안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한다.

다.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라. 하위자에게 상급자의 사적인 일까지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인재육성

가.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나.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공정한 대우

가.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나.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소수 직원들의 권익 보호

가. 회사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신체 부(不)자유 사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① 성 차별에 대한 권익 보호

-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공정한 업무할당 지향

#### ②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권익 보호

-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편견 배제
- 합리적인 평가에 의한 업무 할당

나. 이와 더불어 모든 업무상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 4. 건강과 안전

가. 회사는 항상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

나.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며, 결과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한다.

### 5. 개인 의사 존중

가.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그 범위는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합리적 사업 전개

가.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2. 주주의 보호

가.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나.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 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견해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 승진,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나. 세계인권선언문 및 회사정책에 따라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다.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라.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 4. 환경의 보호

가.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나. 사내 환경지침을 수립한다.

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 시설을 운영한다.

라. 환경보호 인원을 확보하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한다.

#### 5. 위조부품 방지

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하지 않는다.

나.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

다.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 6. 수출제한 준수

가. 수출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나. 수출 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다.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